멕시코에서의 임신 중절 합법화 논의

멕시코 이베로아메리카나 대학교 법학석사 인권전공

김민주

(출처: Animal Político, 2018년 8월 10일.

https://www.animalpolitico.com/2018/08/abortar-mexico-mujeres-estados)

1. 서론

임신 중절[1] 합법화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시 임신 중절의 합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부터 한국에서는 임신 중절을 한 사람과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해왔다.

1)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의한 임신 중절의 의미는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http://www.snuh.org/ (방문일자 2018년 8월 27일)
한편 스페인어로 임신중절은"aborto"라는 단어로 표현하며, "자연적 혹은 유도된 원인에 의해 임신이 중단됨"을 뜻한다.
Aborto: Interrupción del embarazo por causas naturales o provocadas
출처: 스페인 레알 아카데미, http://www.dle.rae.es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신 중절을 허용해 왔는데, 이는 1)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근친), 5)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2] 2012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임신 중절의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적이 있는데, 이는 이익형량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 글에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임신 중절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경우를 간략히 살펴보고 멕시코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법률개정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달 초 아르헨티나에서는 하원에서 통과된 임신 중절 합법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했고, 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의 시위가 매일 일어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 또는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임신 중절을 허용했었다. 하원은 지난 6월 임신 첫 14주와 아기가 출생 후 생존하지 못할 경우에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법안을 129 대 125로 가결시켰다. 하지만 8월 9일 아르헨티나 상원은 31 대 38로 임신 중절 합법화 법안을 부결시켰다.[3]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8년 전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로 상당히 진보적인 양상도 보였지만, 임신 중절 합법화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칠레 역시 3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엄격한 임신 중절 금지 정책을 작년에 완화했다. 작년 칠레 상원은 1) 산모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2) 태아에게 치명적인 선천적 결함이 예상될 경우, 또는 3)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14세

---

2) 모자보건법 제14조
출처: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532&efYd=20180613#0000

3) El Excelsior
출처: https://www.excelsior.com.mx/global/no-al-aborto-en-argentina/1257532 (방문일자 2018년 8월 9일)

미만은 임신 14주 전에, 그 외는 임신 12주 전에 임신 중절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다.[4] 칠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아이티, 니카라과와 더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신 중절을 허용하지 않는 임신 중절 금지 국가였다. 2017년 8월 칠레 헌법재판소는 임신 중절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멕시코 역시 국민의 86%가 가톨릭 신자인 독실한 가톨릭 국가로, 임신 중절에 대해 국민들조차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07년 4월 20일 멕시코시티 의회(Asamblea Legislativa del Distrito Federal, ALDF)는 멕시코시티 형법(Código Penal Para el Distrito Federal)과 멕시코시티 보건법(Ley de Salud del Distrito Federal)의 개정을 통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 법률안을 통해 개정된 조항은 멕시코시티 형법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와 멕시코시티 보건법 제16조 제6항과 제16조 제8항이다. 본 개정안은 여성을 독립적인 주체로 보면서 스스로 자신의 성생활과 생식의 권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시티 의회는 멕시코 합중국 헌법 제4조[5]를 보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선택을 했다고 발표했다. 임신 중절 합법화를 위해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은 "여성을 단순히 자궁으로만 생각하는 사회 편견을 깨기 위해 싸워온 노력이 드디어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멕시코시티 의회의 결정이 멕시코 사회 여권 향상에 있어 매우 큰 진전이며, 드디어 이 나라 여성들의 현실을 알고 정부가 이에 응답하는 법률을 만들게

---

4) Ley Núm.21.030 Regula la despenalización de la interrupción voluntaria del embarazo en tres causales
1) La mujer se encuentre en riesgo vital, de modo que la interrupción del embarazo evite un peligro para su vida
2) El embrión o feto padezca una patología congénita adquirido o genética, incompatible con la vida extrauterina independiente, en todo caso de carácter letal.
3) Sea resultado de una violación, siempre que no haya transcurrido más de doce semanas de gestión. Tratándose de una niña menor de 14 años, la interrupción del embarazo podrá realizar siempre que no haya trascurrido más de catorce semanas de gestión.
출처: 칠레 의회 도서관, https://www.leychile.cl/Navegar?idNorma=1108237

5) 헌법 제4조: 남성과 여성은 법 앞에 동등하다. 이는 가족 계획과 발전을 보호한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책임감 있으며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자유롭게 자신의 가족 계획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출처: 멕시코 하원 도서관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pdf/1_150917.pdf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톨릭계와 보수집단은 앞으로 합법적인 태아 살인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멕시코시티 의회를 비난했다.

2. 멕시코시티 형법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와 멕시코시티 보건법 제16조 제6항과 제8항의 개정

멕시코시티 형법 제144조에서는 임신 중절(aborto)이라는 용어를 임신을 "중단(interrupción)"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동 조에 따르면 임신 중절은 12주까지 가능하며, 임신은 인간의 생식 과정으로 태아의 자궁 내막 착상 단계부터 임신으로 간주한다. 제145조에서는 불법 임신 중절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 임신 중절시 임산부는 3~6개월의 징역에 처하고, 100~300일 동안 사회봉사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임산부의 불법 임신 중절을 시술한 혹은 시술 행위에 참여한 사람은 1~3년의 징역에 처한다. 제146조에서는 강제 임신 중절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임산부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임신 중절을 시킨 사람은 5~8년의 징역에 처하며, 신체적 혹은 정신적 폭력 강도에 따라 8~10년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에서는 불법 임신 중절이나 강제 임신 중절을 시술한 의사, 조산사, 간호사 혹은 그 시술 행위에 참여한 사람은 징역과 부가하여 직업 면허를 박탈한다.

제148조[6]에서는 "책임을 배제하는(excluyente de responsabilidad)" 임신 중절의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1) 임신이 강간(violación)이나 인공 수정(inseminación artificial)에 의한 결과일 경우, 2) 임신 중절을 하지 않을시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이 때 의사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다른 의사가 참석해야 한다. 3) 두 명의 전문 의사의 진단과 충분한 소견에 따라 태아가 유전적 변이 혹은 선천적인 결함(alteraciones genéticas o congénitas)으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 해를 입은 경우와 그에 따라 더 이상 살 수 없는 경우. 이 때 임산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4) 임산부의 과실

6) 제148조의 경우 앞서 2004년 1월 27일에 개정되었다.

행위(conducta culposa)로 인해 자연 유산된 경우이다. 1),2),3)의 경우, 의사는 반드시 임산부에게 임신 중절 과정, 위험성, 결과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임산부가 자유롭게 결정을 내리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멕시코시티 보건법 제16조 제6항에서는 모든 멕시코시티 공공 보건 기관이 무료로 임신 중절 시술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 보건 기관은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임신 중절을 하고자 하는 여성이 자신의 건강에 미칠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닌다. 임신 중절을 하고자 하는 여성이 시술을 신청하면, 적용되는 법률 규정에 따라 5일 내로 시술하도록 한다. 또한, 여성이 다른 공공 혹은 사립 보건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청을 하면 반드시 시술을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제16조 제8항에서는 멕시코시티 공공 보건 기관에서는 성(性) 혹은 생식과 관련된 진료가 우선이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올바른 정보와 책임을 가지고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자녀의 수와 자녀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부모는 자녀 계획, 피임과 관련된 진료 서비스를 받아 계획되지 않았거나 원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태아의 성병 전염 등을 막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공공 보건 기관에서의 위생적이고 올바른 임신 중절 시술을 통해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임신 중절 시술의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멕시코 공식 규정(Normas Oficiales Mexicana) NOM-007-SSA2-2016[7]에 따르면, 본 규정에서 정의하는 임신 중절은 수정된 배아나 태아를 모(母)에게서 배출(expulsión) 혹은 축출(extracción)하는 것으로 이 때 태아나 배아는 500그램 이하일 것을 요하며, 임신한 주수로 따지면 약 22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멕시코시티 의회는 멕시코 공식 규정에 근거하여 임신 12주까지는 여성이 자유롭게 스스로 임신 중절 여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7) 출처: 멕시코 연방 관보, http://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432289&fecha=07/04/2016

3. 임신 중절 합법화 반대 의견

멕시코시티 의회의 임신 중절 합법화로 멕시코 내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첫째 임신 중절 합법화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라며 생명을 경시하는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여성은 자유롭게 자신의 신체와 생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지만, 자궁 속 태아는 자신이 스스로 생명권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멕시코 합중국 헌법 제1조[8]에서는 "모든 사람은 멕시코 헌법과 멕시코가 가입한 모든 국제 조약, 협약, 협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누리고 이를 보호하며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중지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생명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반대 진영은 생명권이 더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자기결정권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공공 보건 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임신 중절 시술에 참여하는 자들 역시 문제된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종교적, 철학적, 사회적 신념이 있는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공공 보건 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임신 중절을 원하는 여성이 시술을 요청할 경우, 자신의 신념과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시술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멕시코 합중국 헌법 제24조[9]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이 불법 임신 중절을 할 경우, 선택을 한 여성의 경우 3~6개월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300일 동안 사회봉사에 처하는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시술을 하거나 이에 참여한 의료인들은 1~3년의 징역에 처하고 자신의 직업 면허를 박탈당하는 등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도 문제된다.

---

8) Artículo 1. En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todas las personas gozarán de los derechos humanos reconocidos en esta Constitución y en los tratados internacionales de los que el Estado Mexicano sea parte, así como de las garantías para su protección, cuyo ejercicio no podrá restringirse ni suspenderse, salvo en los casos y bajo las condiciones que esta Constitución establece.
출처: 멕시코 하원 의회 도서관,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pdf/1_150917.pdf

9) Artículo 24. Toda la persona tiene derecho a la libertad de convicciones éticas, de conciencia y de religión, y a tener o adoptar, en su caso, la de su agrado…
출처: 멕시코 하원 의회 도서관,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pdf/1_150917.pdf

4. 결론

현재 멕시코 내에서 여성이 법률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자유롭게 아무런 이유 없이 합법적으로 임신 중절 시술을 할 수 있는 곳은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가 유일하다. 멕시코 내 모든 주(州)에서 강간을 통한 임신은 합법적으로 임신 중절이 가능하다. 다만, 형법에서 다양한 경우를 합법적 임신 중절로 간주하여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곳은 매우 적다. 예를 들어 다섯 개의 주에서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선천적이나 유전적인 이유, 과실로 인한 유산인 경우, 동의 없는 인공 수정의 경우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있고, 미초아칸(Michoacán) 주에서는 개인의 경제적인 이유까지 고려해 임신 중절을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 한편 케레타로(Querétaro)와 과나후아토(Guanajuato) 주에서는 단지 두 가지 경우, 즉 강간으로 인한 임신과 과실로 인한 유산인 경우에만 합법적인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임신 중절의 가장 큰 쟁점은 언제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이익형량 하는 것이었다. 또 태아를 살아있는 인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도 아직 분명한 기준점을 찾지 못했다. 이 문제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말처럼 그 우선성 혹은 그 중요성을 분명히 나누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찾지 못했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여권 신장을 위해 많은 사회적 운동이나 캠페인을 하고 있다. 오늘날 멕시코 여성들이 거리로 나가 합법적 임신 중절을 요구하는 것 역시 멕시코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사회 속에서 그동안 여성들이 임신을 계속할 것인지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던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